

# 미국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

**나수엽**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선임연구원 (syna@kiep.go.kr, Tel: 044-414-1072)

**박진희**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(jhpak@kiep.go.kr, Tel: 044-414-1285)



## 차 례

1. 개요
2.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의 주요 내용
3. 평가 및 시사점

## 주요 내용

- ▶ 미국의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(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)」이 2022년 6월 21일 발효될 예정임.
  - 이 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,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은 물론 이 법에 의해 식별된 특정 단체(기업)가 생산한 모든 제품을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.
    - 또한 강제노동 관련 외국인에 대한 제재(미국 내 자산 거래 금지 및 입국·비자 제한조치) 규정도 포함됨.
- ▶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은 바이든 행정부의 강제노동 관련 규제에 관한 집행을 강화하고, 이를 새로운 통상제재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.
  -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시하는 ‘노동자 중심 무역정책’의 핵심 요소이며,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은 이 같은 미국의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 의지와 대응을 집약한 결과물임.
  -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금지 범위가 확대되고, 강제노동 관련 인적제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강제노동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강화됨.
  - 바이든 행정부는 강제노동을 중국의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평가하고 대중 통상제재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함.
    -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됨.
  -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 시행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반발과 강제노동 문제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향후 강제노동 관련 규제를 둘러싼 미·중 간 첨예한 통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.
- ▶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 발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.
  - 이 법 제정을 계기로 강제노동 관련 규제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확산될 전망이며, 우리나라도 강제노동 규제 관련 논의 확대에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.
    - 강제노동과 같은 보편적 가치문제가 통상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제고가 중요
  - 우리 기업도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 규정에 의해 통상제재 대상에 해당할 위험이 있으므로, 공급망 실사 및 ESG 경영강화를 통해 강제노동으로 인한 통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함.
  -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 규정에 의해 작성되는 전략 보고서가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 대응에 유용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하여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.

## 1. 개요

■ 미국의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(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)」이 미 의회에서 발의한 지 2년 만인 2022년 6월 21일 발효될 예정이다.

- 이 법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되거나 이 법에 의해 식별된 특정 단체가 생산한 모든 제품을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며, 강제노동 관련 외국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.

※ 여기서 강제노동은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 제7조 규정의 정의에 따라, 처벌의 위협하에 비자발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동 및 용역을 의미(재소자 노동, 계약노동 및 아동노동 포함)

- 미국은 이미 1930년 관세법 307조에 근거해 「인도보류명령(WRO: Withhold Release Order)」 조치를 통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외국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.<sup>1)</sup>

※ 1930년 관세법 307조: 강제노동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채굴, 생산 및 제조된 모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조항으로, 미 관세국경보호청(U.S.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)이 이를 집행

○ 이 조치를 관장하는 미 관세국경보호청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WRO 조치는 54건이며, 그중 중국이 가장 많은 비중(35건)을 차지<sup>2)</sup>

- 또한 「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법(Uyghur Human Policy Act of 2020)」 시행으로 미국 내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도 증대됨.

- 이러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‘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’ 추진을 중시하면서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 내 여론이 고조된 결과, 미 의회에서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의 입법화를 추진함.

○ 2020년 3월 미 의회는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안」의 상·하원 버전을 발의하였으며, 이후 논의를 거쳐 양 버전의 절충을 거친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아 하원(2021. 12. 14)과 상원(2021. 12. 16)을 통과한 데 이어 대통령 서명(2021. 12. 23)까지 완료됨.

○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를 앞두고 있음.

■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은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, 대중 통상제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.

- 이에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,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노동 통상제재의 대상 및 범위, 기타 제재 사항, 주요 집행 요소들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.

1) 인도보류명령에 해당되는 제품은 미국 내 각 항구에서 통관이 중단되고 억류되어 △미국 밖으로 재수출되거나 △수입업자가 세관국경보호국에 해당 제품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미국 내 반입이 가능해짐.

2) 미국 관세국경보호청(CBP), “Withhold Release Orders and Findings List,” <https://www.cbp.gov/trade/forced-labor/withhold-release-orders-and-findings>(검색일: 2022. 6. 14).

## 2.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의 주요 내용

### 가.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의 구성 및 범위

-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은 총 7개 조로 나뉘며, 강제노동 집행 관련 전략수립(2조)·강제노동 제품의 수입금지(3조)·강제노동 관련 인적제재 부과(5조)가 핵심 조항임.
- 2조, 3조, 5조의 규정과 주요 내용은 별도로 설명하고, 이를 제외한 각 조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[표 1]에 정리함.

표 1.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의 구성

구성	주요 내용
1조. 강제노동 규제 관련 정책의 취지 및 추진 의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930년 관세법 307조에 의거,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금지 강화와 강제노동 관행 근절을 위한 국내의 노력, USMCA 협정 23.6조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협조 등이 미국의 주요 정책 사항임을 강조</li> <li>- 고문, 구금, 강제노동, 소수민족 및 종교탄압 등의 잔학 행위 방지 노력을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 것으로 인식</li> <li>- 양자간 외교 채널 및 다자기구, 비자 및 금융제재·수출 제한 및 수입통제 등의 수단을 통한 강제노동 문제 해결 의지 강조</li> </ul>
2조. 강제노동 제품 수입금지 집행을 위한 전략	- '2. 나'에서 별도 설명
3조. 신장위구르자치구 또는 특정 단체에서 채굴, 생산 또는 제조한 제품의 수입금지	- '2. 다'에서 별도 설명
4조. 강제노동 해결을 위한 외교적 전략	- 신장위구르자치구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와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 보고서 작성 및 적절한 의회 위원회에 보고(국무부 장관 담당)
5조. 강제노동 관련 제재 부과	- '2. 라'에서 별도 설명
6조. 일몰조항	- 3조, 4조, 5조의 효력 소멸에 대한 규정
7조. 정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에서 사용한 주요 용어의 정의를 제시</li> <li>· 적절한 의회 위원회: [미 하원] 외무위·재무위·세입위·국토안보위, [미 상원] 외교위·은행주택도시위·재무위·국토안보 및 정부위</li> <li>· 강제노동: 처벌의 위협하에 비자발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동 및 용역을 의미(재소자 노동, 계약노동 및 아동노동 포함)</li> </ul>

자료: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(Public Law. 117-78)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.

## 나. 강제노동 제품 수입금지 집행을 위한 전략 수립

■ 제2조는 1930 관세법 307조에 의거 중국 강제노동 제품의 수입금지 집행에 필요한 여러 요소에 관한 전략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전략 수립은 강제노동집행 태스크포스(Forced Labor Enforcement Task Force)가 전담함.<sup>3)</sup>
- 강제노동집행 태스크포스는 제2조에 따라 강제노동 사용 제품의 수입 리스크 및 위험 완화에 대한 평가, 강제노동 관련 단체·품목 및 업종 리스트, 수입업체에 대한 지침 등을 담은 전략을 수립해야 함.
  - 강제노동집행 태스크포스는 「강제노동방지법」 제정 180일 이내(2022. 6. 21)에 이러한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적절한 의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.

■ [강제노동 사용 제품의 수입 리스크 및 위험 완화에 대한 평가] 신장위구르자치구 및 중국에서 강제노동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채굴, 생산 또는 제조된 제품의 수입 리스크와 이에 대한 완화 절차를 종합 평가함.

- 강제노동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의 공급망에 대한 잠재적 개입을 통해 강제노동 사용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(제3국 경로를 통한 수입 포함)될 수 있는 위험 평가
-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절차 평가

■ [강제노동 관련 단체·품목 및 업종 리스트] 전략 보고서에 다음의 단체(entities) 및 품목 리스트, 관련 계획을 식별·제시해야 함.

- ①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강제노동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제품을 채굴, 생산 또는 제조하는 단체
- ② 신장위구르자치구 정부와 협력하여 강제노동 또는 위구르인, 카자흐인, 키르기스인 혹은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박해받는 집단의 구성원을 모집·수송·은닉·수용하는 단체
- ③ ① 또는 ②의 리스트에 해당하는 단체에 의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채굴, 생산 또는 제조한 품목 리스트
- ④ ③에 기술된 품목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단체
- ⑤ 신장생산건설단을 포함 신장위구르자치구나 강제노동을 사용하는 기타 정부의 노동계획 목적을 위해 신장위구르자치구 정부 또는 신장생산건설단과 협력하는 사람으로부터 재료를 조달하는 시설 및 단체<sup>4)</sup>
- ⑥ ⑤에 기술한 시설 및 단체를 추가적으로 식별하는 계획
- ⑦ 미국으로 자체 제품을 수출하는 각 단체에 대한 집행계획
- ⑧ 집행을 위해 우선순위가 높은 품목 리스트(high-priority sectors); 면화, 토마토, 폴리실리콘 포함
- ⑨ 우선순위가 높은 업종에 대한 집행계획

3)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(2020. 5)에 의해 설립된 조직(국토안보부 장관이 의장직을 맡고 국무부, 재무부, 법무부, 노동부 및 무역대표부 대표로 구성)으로, USMCA 이행법안에 따른 미국 행정부의 강제노동 관련 제품의 수입금지에 관한 집행을 다루는 중심 역할을 담당함.

4) 신장생산건설단: 신장위구르자치구 변경 방위와 개발을 목적으로 1954년 설립된 준군사조직으로, 신장위구르자치구 정치·경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종의 군산복합체 성격을 띠(2019년 기준 XPCC의 총생산은 신장위구르자치구 전체 GDP의 20%를 차지).

■ [수입업체에 대한 지침] 수입업체에 대해 다음 사항과 관련된 지침을 제시해야 함.

- 수입업체가 중국의 강제노동 사용 제품을 수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사(due diligence), 효과적인 공급망 추적 및 관리 조치
- 중국산 제품이 강제노동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생산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 유형, 특성 및 범위

## 다.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

■ [반박 가능한 추정 적용에 따른 강제노동 제품 수입금지] 제3조는 미 관세국경보호청장(Commissioner of U.S.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)의 결정으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제품에 대해 반박 가능한 추정을 적용하여 1930 관세법 307조에 따라 미국 내 수입 및 입항을 금지하도록 규정함.

- (1)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채굴, 생산 또는 제조된 모든 제품 (2) 제2조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전략 보고서에서 식별한 단체(①, ②, ④, ⑤에 해당)가 생산한 제품
- 즉 (1) 및 (2)에 해당하는 제품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어 1930 관세법 307조가 적용됨에 따라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됨.

■ [예외 조항 상기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추정을 반박하기 위한 예외 사항으로 다음을 제시함.

- 수입업자가 △ 제2조 전략 보고서가 제시한 지침(실사 및 효과적인 공급망 추적·관리 조치 등) 및 지침 이행에 관한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△ 해당 제품의 강제노동 사용 관련성 확인을 위한 미 관세국경보호청의 모든 질의에 완전하고 충분히 응답하며 △ 해당 제품이 강제노동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채굴, 생산 및 제조되지 않았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
- 미 관세국경보호청장은 이러한 예외 조항을 최종 결정하며, 그 결과를 적정한 의회 위원회에 보고함.

## 라. 강제노동 관련 인적제재 부과

■ 제5조에서는 「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법(Uyghur Human Rights Policy Act of 2020)」의 수정을 통해 강제노동 관련 외국인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「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법」에 의거한 제재 사유에 강제노동 관련 심각한 인권침해를 추가 명시함.<sup>5)</sup>
- 이에 따라 대통령은 위구르인, 카자흐인, 키르기스인 또는 기타 박해받는 집단 구성원 또는 기타 신장위구르자치구인에 대한 강제노동과 관련하여 심각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외국인(중국정부 관리 포함)을

5) 「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법」은 신장위구르자치구 및 위구르인을 포함한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외국인을 식별하고 이들에 대한 제재 부과를 규정함.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유형으로 고문,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대우, 재판 없는 장기 구금, 납치 및 구금, 생명·자유·개인 안전에 대한 권리 부정을 제시함.

식별하여 적절한 의회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(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 제정 180일 이내).

- 또한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△ 미국 내 모든 자산, 미국인 소유 또는 지배하에 있는 모든 자산 거래를 금지 및 차단하고 △ 미국 입국 불허 및 비자 신청 거부, 기존 비자 취소 및 가석방 불허 등의 제재를 부과해야 함.

### 3. 평가 및 시사점

■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의 특징 및 의미 이 법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집행을 강화하고 이를 새로운 대중 통상제재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함.

- [강제노동에 대한 규제는 ‘노동자 중심 무역정책’의 핵심 의제]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대통령 통상정책 우선 어젠다의 하나로 ‘노동자 중심 무역정책’을 중시하고,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가 핵심 요소라는 입장을 견지함.
  - 강제노동이 ‘중요한 불공정 무역관행임과 동시에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욕’이라고 인식하고 노동자 피해와 보편적 가치 보호를 위해 강제노동을 적극 규제해야 한다는 의지를 지속 표출
  -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은 이와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 의지와 대응을 집약한 결과로 파악됨.
- [강제노동 관련 규제 확대·강화]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에 의거 강제노동 관련 통상제재의 범위가 확대되고 인적제재까지 포함됨에 따라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됨.
  -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한 제품은 물론 강제노동집행 태스크포스가 전략 보고서에서 식별한 여러 특정 단체가 생산한 제품 역시 강제노동을 사용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을 모두 수입금지 대상으로 포괄
  - 이와 같은 강제노동 사용 추정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 적용을 반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나, 반박을 위한 입증 책임을 수입업체에 지음으로써 규제 강도를 제고
  -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은 제5조에 의거 제품뿐만 아니라 중국의 강제노동 관련 외국인에 대한 제재(자산 거래 금지, 입국 불허 및 비자 취소)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
- [새로운 대중 통상제재 수단 활용의 법적 근거] 바이든 행정부는 강제노동을 불공정 무역관행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으며, 이를 새로운 대중 통상제재 수단으로 본격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비침.
  - 바이든 행정부는 「2021 중국 WTO 이행평가 보고서」(2022. 2. 16)를 통해 처음으로 강제노동을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일으키는 주요 우려 사항의 하나로 제시한 데 이어 「2022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」에 서는(2022. 3. 31) 강제노동을 중국의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평가함.
  - 이는 인권·강제노동과 같은 보편적 가치 이슈를 통상규범 범주로 끌어들이 대중 통상제재 조치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됨.
  -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은 바로 강제노동 관련 대중 통상제재의 법적·제도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됨.

- [중국의 반응 및 입장] 중국은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 시행을 반대한다는 입장과 강경한 대응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음.
  - 2021년 12월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 서명이 완료된 직후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“이 법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훼손하고 미국의 이익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며 미국이 잘못을 시정하길 바란다”고 언급함.
    - 2022년 6월 2일에는 “이 법이 시행되면 미·중 기업 간 정상적인 협력을 심각하게 방해할 것”이라는 경고와 함께 “중국의 존엄과 이익 수호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”이라는 대응 의지를 표출
  - 바이든 행정부의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 집행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반발 수위와 강제노동 이슈의 민감한 속성을 고려해볼 때 미·중 간 강제노동 관련 규제를 둘러싼 통상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빚어질 것으로 예상됨.
  
- 미국의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 발효에 따른 강제노동에 대한 통상규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함.
  - [강제노동에 대한 규제 관련 인식 제고] 미국과 EU를 비롯한 주요국에서 이루어지는 강제노동 규제 관련 논의 확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.
    - 바이든 행정부는 제2차 미국·EU 무역기술위원회(2022. 5. 15~16)에서 강제노동 근절과 노동권 증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(무역과 노동 대화)를 신설하기로 하였으며, IPEF 협상에서도 높은 수준의 노동기준 설정을 주요 협상 의제로 추진한다는 방침
    - EU 집행위원회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실사에 관한 지침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EU 시장 진입을 금지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(2022. 2. 23)한 데 이어 유럽의회는 강제노동 제품의 EU 수입금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(2022. 6. 9)
    - 이외에 캐나다, 호주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금지에 관한 법안의 입법화를 추진 중
    - 이와 같은 강제노동 규제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 제정을 계기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며, 이는 강제노동에 대한 글로벌 통상규제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큼.
    -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며, 무엇보다 강제노동이 인권·윤리적 차원을 넘어 통상규제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 제고가 중요함.
  - [강제노동 관련 통상 리스크 대비]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의 발효에 따른 통상 리스크에 대비해야 함.
    -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도 강제노동 관련 통상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.
    - 이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소재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강제노동 및 소수민족의 모집·수송에 관련되거나 신장위구르자치구 또는 중국의 강제노동 관련 노동 프로그램에 연루된 특정 업체로부터 소재를 조달 받는 기업의 생산품도 제재의 대상이 되기 때문임.
    - 이에 현지 진출 기업을 포함하여 대미 수출에 관련된 우리 기업은 공급망 실사 및 ESG 경영강화를 통해 강제노동이 야기할 수 있는 통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함.
    - 특히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이 집행의 우선순위 품목으로 지목한 면화, 토마토, 폴리실리콘을 주요 소재로 조달하는 기업(섬유, 반도체 및 태양광 분야)의 경우 보다 철저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함.
  - [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의 전략 보고서 모니터링] 미국의 강제노동 규제 강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되는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.

-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3조 규정에 따라 강제노동집행 태스크포스에 의해 작성되는 전략 보고서는 제재 대상인 특정 단체 리스트, 수입업자에 대한 지침(실사 및 효과적인 공급망 추적·관리 조치·강제노동 추정 반박에 필요한 증거 특성 관련) 등 강제노동 관련 집행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.
- 이 보고서는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 발효와 동시에 제출되며 이후 매년 업데이트됨.
- 이 보고서가 담을 내용은 「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」 발효에 따른 규제 대응에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므로, 업데이트되는 주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. **KIEP**